

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 04. 25(금)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4. 03. 13

나. 제안자 : 이도형, 차준택 의원 (찬성자 6인)

다. 회부일자 : 2014. 03. 13

라. 상정일자 : 2014. 04. 25(제215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서면대체
- 검토보고 : 왕동항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노력할 책무가 있고, 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구조금지원, 주거지원,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음
- 이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 시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도록 함(안 제4조)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범죄피해자지원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지원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주민의 이해 증진을 통하여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도록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 활동 관련자 교육 및 홍보 활동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함(안 제10조)
-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업무는 국가사무로 법무부에서 직접 관장하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시·도 등에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등록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 등록법인으로는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센터의 운영사업비는 관내 기업으로 구성된 이사의 회비와 인천광역시 보조금, 법무부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음.
 - ❖ 2014년도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예산액 : 244백만원
 - 시비 137백만원(57%), 국비 35백만원(14%), 회비 72백만원(29%)
- 동 제정 조례안은 시 차원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구축을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하여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등으로 관련 내용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 현재 추진체계 및 내용을 살펴보면 법무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시·도에서는 그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체계로 구축되어 있고,
- 실행 내용에 있어서도 시·도간의 특수성과 차별화된 정책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으로 향후 동 제정 조례안을 시행하게 될 경우 인천광역시 차원의 차별화된 정책 수요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법무부에 등록된 법인에 대해서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법인 및 단체의 등록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등록법인 이외의 법인 및 단체가 관련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의 대책과 지원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없음

5. 토론요지

- 가. 찬 성 : 없음

나. 반 대 : 이용범, 류수용, 이강호, 홍성욱 위원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4명, 찬성 : 4명, 반대 : 0명)

❖ 수정가결 내용

- 안 제5조 제2항 제4호중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를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의”로 수정하고,
- 안 제11조 제1항중 “법인 및 단체에게”를 “법인에게”로 수정함.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3. 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 제2항 제4호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를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의”로 한다.

안 제11조 제1항 “법인 및 단체에게”를 “법인에게”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5조(종합계획 수립·시행)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 다.</p> <p>1. ~ 3. (생략)</p> <p>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 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 관과 <u>범죄피해자지원법인</u> 등 <u>피해자보호단체와의</u> 협력지원 에 관한 사항</p> <p>5. (생략)</p> <p>제11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범 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u>법인 및 단체에게</u> 예산의 범위 에 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5조(종합계획 수립·시행) ① (제정 안과 같음) ② ----- ----- ---</p> <p>1. ~ 3. (제정안과 같음)</p> <p>4. ----- ----- ----- <u>범죄피해자지원법인의</u> -----</p> <p>5. (제정안과 같음)</p> <p>제11조(재정지원 등) ① ----- ----- <u>법인에게</u> ----- ----- -----</p> <p>② (제정안과 같음)</p>

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시책발굴 등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지원이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 수립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범죄피해자지원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범죄피해자지원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 양

한 의견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지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피해자보호단체 등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피해자지원 및 범죄예방 활동을 하는 사회단체의 대표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재위촉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표창)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